#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2. 12. 14.

증권 선물 위원회

- 1. 일 시 : 2022년 12월 14일(수) 10:00~19:20
-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 3. 출석위원

이 동 욱 위 원

## 4. 회의경과

#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2년도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회의 개회를 선언함.

## 1) 회의록 보고

□ 2022년도 제21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 2) 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228호 『**증권선물위원회 비공개 안건의 비공개 기간 연장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229호 『IBK투자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

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관련하여 일부 직원이 관련법 이해가 부족해서 상품가입서류에 '설명서가 없음' 이라고 표시했는데 이것은 서류작성의 오류이며 실제로 설명서는 교부했음. 직원이 '설명서 없음'이라고 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당사가 만든 설명서가 없다는 부분을 표시한 것으로 실제로는 운용사의 제안서를 제공했으며, 이 부분 은 동석했던 OOO은행 직원이 확인을 해 주었음. 실제적 으로 교부했다는 점을 충분히 참작해 주시기 바람. 투자광 고 관련해서는 판매영업직원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는데 발송목적이나 양태 등 실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람. 이것은 고객의 요청에 의해 발송한 문자메시지일 뿐이지 투자광 고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림. 또 관련법규에 대해서 해당 직원이 인식하지 못한 무지한 부분이 있었음. 그렇지만 의 도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서 투자자 가 어떤 피해를 봤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 문자메 시지 발송 전에 잔고가 1억 이상인 계좌가 한 3개 정도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서 선처해 주시기 바람.
- (위원) 설명서를 교부했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이 되는지?
  - ▶ (진술인) 그때 당시 동석했던 OOO은행 직원이 확인을 해주었음.

- ㅇ (위원) 고객에게 확인받는 것은 어려운지?
  - ▶ (진술인) 담당직원이 접촉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연락이 되지 않았음.
- (위원) 검사국에서는 고객에게 설명서 교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 (보고자) 저희가 검사 나갔을 때 불완전판매 관련해서 수많은 고객들을 다 연락해서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그렇기 때문에 주로 회사가 보관·유지하고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해 왔음.
- (위원) 그러면 OOO은행 직원의 확인서는 계열사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이해당사자인 고객과의 녹취라든가, E-mail 기록 등 설명서 교부한 사실에 대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위반으로 보지 않는데 그러한 자료를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것이 없음.

# ▷ 진술인이 퇴장함.

 (위원) 피해자가 "나 이런 것을 받은 바 없다"는 것이 확인 되었으면 좀 더 명확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 설명 서가 없다고 써 놓은 것 자체가 약간 오인했을 가능성도 있 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완전한 정도로 의무를 다 이 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위반으로는 하되 과태료 금액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임.

- (보고자) 설명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를 감안 하여 위반의 동기를 '상', '중', '하' 중에 '하'로 적용했음. 다만, 위반의 결과는 환매중단으로 고객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보는 양정기준에 따라 위반의 결과는 '중대'로 보아 과태료 금액을 산정했음.
- (위원)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에 는 감경의 여지가 없는지?
- (보고자) 고객의 요청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응하는 것은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고 1억 원 이상의 고객에 대해서 절차를 지킨다면 아무 문제가 없음. 투자광고라는 것은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다는 사전적 의미도 있지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광고 규제라는 것이 매매유인의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가지고 판단해 왔음. 그렇기 때문에고객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상품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알리는 것은 신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목적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어 광고 위반사항에 포섭이 된다고 판단을 하였음.
-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의결함

# ▷ 증선위원장 입장(증선위원장이 이어서 회의주재)

- □ 의결안건 제230호 『메리츠증권㈜에 대한 부문 및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보고자) 지난 증선위에서 지적된 부분은 크게 2가지였음. 첫 번째로 본 건은 메리츠증권㈜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활동에 서 적발된 것을 금감원 검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사안임. 지난 2020년에 검사 및 제재규정을 개정하면서 금융위 또는 다른 감독기관 또는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 관련 법규에 의 해서 제재대상자에 취한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 여 제재의 종류를 정하거나 제재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음. 특히,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경우에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임. 당시 보도 자료를 냈던 취지를 보더라도 이것은 기관 스스로 시정하려 는 노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일정부분 감경함으로써 기 관 자체의 내부통제 활동을 독려하는 취지에서 감면을 해 주자는 규정이 들어간 상황임. 다만, 지금까지 여러 유사한 건에서 동 감면을 적용한 적은 없었는데, 지난 의견진술에서 메리츠증권㈜ 측에서 본인들의 적극적인 내부통제 활동의 결과임을 강조하는 항변이 있었고, 당시 논의에서도 이 부분 에 대해서 저희가 규정 개정을 한 취지를 감안하여 회사 차 원의 노력이 인정된다고 생각하면 일정 부분 감경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음. 그래서 저희가 검 토한 바에 의하면 이번부터는 이렇게 회사 차원에서 스스로 임직원 매매위반을 적발하여 상당부분 제재가 이루어진 경

우에는 조금이라도 과태료를 감경함으로써 회사 스스로 이 런 활동을 하게끔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다 만, 감경비율에 대해서는 이것을 최대수준인 50%까지 할 경 우에는, 위반 대상자가 스스로 본인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의 최대감면율이 50%인데 회사에서 적발이 됐을 경우에도 50%라고 한다면, 자진신고를 하는 노력을 구축(驅逐)할 우려 가 있어 보임. 그래서 이런 회사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인 정되고 상당부분 제재가 이루어지면 20% 정도 감경할 수 있 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의견임. 그 리고 두 번째로 그때 의견진술한 사람들 중에서 조금 더 사 실관계나 본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셔서 행위 자 전체에 대한 안건이 보류가 되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금 융위와 금감원에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하였고, 그 결과 ☆☆ ☆, ★★★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음. 그래서 지금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이 2명에 대해 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는 과태 료 제척기간도 있으므로 이번에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실무의견을 말씀드림.

- (위원) 금융회사 자체 점검에서 확인된 사안, 그리고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 20% 정도의 과태료 감경을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저도 같은 의견임. 그리고 2건에 대 해서도 당사자한테는 중요한 사안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이 있으면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함.
- (위원) 두 가지 의견에 저도 다 동의함.

- (위원) 말씀하신 두 가지 모두 동의함.
- (위원) 자진신고 외에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통한 시정 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감경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림. 그리고 금감원의 검사제재가 형사법을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형사법상의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해서 완벽하게 입증하지 않는다면 가급적이면 피조사자 내지는 피검사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원칙은 맞다고 생각함. 두 사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엄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림. 그래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투회사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의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내지는 제재기준 같은 것들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위원장) 제230호 안건과 관련하여 논의해 주신 결과를 감안하여 임직원의 자기매매 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활성화 차원에서 과태료 20%를 추가감경하겠으며, ☆☆☆,★
  ★★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혐의입증 부분을 좀더 보완하여 다음 증선위에 상정하도록 하겠음.
-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 의결안건 제231호 『디에스투자증권㈜의 금융투자업 변경인 가 및 업무단위 추가등록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 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의결함

- ▷ 증선위원장 퇴장(증선위 상임위원이 이어서 회의주재)
- □ 보고안건 제58호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보고』, 보고안건 제59호 『○○○○○ ○○○ 방안 보고』를 일괄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디지털 시장의 성장과 다양한 투자자들의 수요 등을 감안했을 때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판단이 됨. 또 증권 형 토큰의 발행 및 유통을 제도권 내로 편입함으로써 투자 자보호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유통플랫 폼을 허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개업자가 파산하 는 경우 그 파산과 무관하게 투자자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 는 것인지가 궁금함.
  - (보고자) 장외거래중개업이 신설되는 경우에도 여기는 금융 투자업자로서 예를 들어 투자자의 증권을 별도 예탁·예치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를 해야 된다거 나 이런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동시에 금융투자업자 로서 투자자의 예치금을 증권금융에 별도 이체해야 되는 그

런 의무들이 다 적용이 됨.

- (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포섭하면서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더 해야 하는지 이런 실질적인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함. 마지막으로 저는 중요한 것이 유통 부분도 있지만 발행부분이라고 생각함. 지금 발행 측면에서도 다양한 여러가지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 가상자산 부분에 있어서 기존 증권신고서의 기재 서식이나 내용이 과연 어떻게 다를지,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임. 궁극적으로 증권신고서를 발행하는 발행업자에 대해서 어떠한 실질적인 의무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함. 그래서 유통부분만이 아니라 발행인에게 실질적으로 투자자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법적의무를 지우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증권신고서에 어떻게 기재되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계속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음.
- (보고자) 말씀하신 내용 모두 저희가 제도화할 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함. 그래서 그런 것들은 법을 만들면서 하위규정이나 신고서식 같은 것에 보완을 하겠음.
- (보고자)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증권성을 갖고 있어서 똑같이 취급해야 되는 것은 자본시장 법 체계에 넣어서 규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 위원님 말 씀하신 부분들은 앞으로 더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음.
- ㅇ 각각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 각각 원안접수함

- □ 의결안건 제232호 『원주축산업협동조합 등 5개 농·축협의 금융투자업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펀드판매 저변확대라든지, 서민금융의 활성화 차원에서 단위농·축협, 상호금융이나 우체국에 펀드판매를 허용했는데 농·축협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다르다보니까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펀드판매 인가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는데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없는지?
  - (보고자) 농협중앙회에서 반기별로 모아서 일괄 신청을 하고, 특히,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요건들을 구비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조율을 하고 나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개 별 단위별로 신청하는 것이 심사 시 애로나 이런 문제는 아 직까지는 없다고 파단하고 있음.
  - (위원)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에 대해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보고자) 저희가 발표했던 정책방향을 보면 성과를 점검한 뒤에 판매상품을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얘기한 것 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보고 필요성이 있다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음. 다만, 단 위농협에서 아직 그런 요청은 없었음.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워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233호 『파인아시아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적시에 확인하지 못하여임원지위를 유지 시킨 사실은 인정함. 해당 임원이 금고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었음에도 지배구조법상 결격사유에해당함을 인지하지 못하였음. 당시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으로이를 확인하지 못한 실수를 인정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림. 다만, 업무보고서의 내용에 사실과 다른허위가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함. 결격자를 임원신분으로유지하여 해당 임원은 회사에서 임원의 지위를 갖는 것은사실임. 임원의 지위를 갖는 사실 그대로를 업무보고서에작성하여 제출한 것임. 임원 결격자를 임원으로 유지시킨실수는 있으나 이것이 업무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것은아니라고 생각이 됨. 과태료 금액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금감원은 위반건수를 3건으로 하여 법령기준금액 6,000만원의 60% 그리고 3건을 곱해서 1억 800만 원을 예정하고

있음. 금감원은 해당 임원이 임원으로의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 중 임원으로 보고한 업무보고서 전부에 대해서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본 건은 해당 임원이 임 원의 지위에 있다는 하나의 사실을 반복적으로 보고한 것 에 불과함. 검사제재규정 [별표3]을 보시면 '2개 이상의 동 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 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 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 이 규정에 따르면 본 건의 경우에도 1개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됨. 지배구조법상 유사 행위에 대한 제재와의 균 형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에 대한 과태료 법령 기준액은 6,000만 원임. 이에 반해 임원 선임 시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태 료 법령기준액은 3,000만 원임. 본 건은 임원인 자에 대한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임원 선임 시 자 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지배구조법 제7조제1항)와 구조 적으로 유사함. 제재수준은 동일한 수준이 되어야 형평에 부합해 보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임원 선임 시 자 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령기준액은 3,000만 원이 고 1건으로 처리될 수 있음.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 경우가 됨. 그런데 본 건 과 같이 임원의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이 경우 를 업무보고서 허위제출로 보아 법령기준액 6,000만 원과 3건으로 처리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 각이 됨. 동일한 수준의 행위에 대해 더 중하게 조치하는 것을 형평의 관점에서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금감원

은 위반행위의 동기를 '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회사는 임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임원으로 기재해서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것임. 업무보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다는 어떠한 인식이나 의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반행위의 동기를 '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재고를 부탁드림. 검사제재규정 [별표3]은 '고의나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 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건의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부주의나 오류에 따른 것이고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과태료 부과 면제까지도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림.

- (위원) 당연 결격이 되어 임원의 지위를 잃어버려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마치 임원의 권리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시면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 (진술인) 그 당시 회사로서는 임원으로 생각을 했고, 회사가 임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이 사람은 임원이 아니라고 쓰는 것 자체는 회사에 기대하기 어려운행위라고 생각이 됨.
  - ▷ 진술인이 퇴장함.
-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의결함

- □ 의결안건 제196호 『에셋플러스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가이드라인 준비를 잘 해 주신 것 같음. 저는 이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한다면 향후에 유사한 사안이 나왔을 때도 예측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원조치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음.
  - (위원) 매매손익의 귀속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 인을 포함한 임직원이 법인에 대해서 50% 지분 초과 보유 한 경우에 매매손익의 귀속 가능성이 임직원에게 있다고 보 시는 것 같은데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는 것이 맞나 하는 의 문이 있음. 적어도 임직원 본인이 50% 초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여야 자기매매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 각하시는지?
  - (보고자) 본인 말고 특수관계인한테 차명으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해서 50% 초 과를 하는 것이 자기매매 규제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의결함

- □ 의결안건 제234호 『㈜트라움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의결함
- □ 의결안건 제235호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당시 직원들이 실적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직원 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부득이 ◇◇ 명의로 증권계좌를 만 들어서 주식거래를 하게 되었음.
  - (위원) ◇◇ 명의 계좌로 주식매매를 한 자금은 누구의 것인지?
    - ▶ (진술인) 제 자금과 아내의 자금임.
  - (위원) 그 당시에 은행에서 이런 거래가 위법이라는 것에 대한 교육이 없었는지?

- ▶ (진술인) 교육은 전혀 없었고, 제 건이 발생하고 나서 준법감시부에서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가족 명의 주식 거래,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하지 말라고 직원들한테 확약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제 주식거래매매가은행 실적을 위한 순수한 의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선처를 부탁드림.
- ▷ 진술인이 퇴장함.
- ㅇ 워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의결함

(16시 18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 □ 의결안건 제236호 『㈜네이처리퍼블릭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 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 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위탁가맹에 대한 수익인식 회계오류가 발생한 사유는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지 못하고 수기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재경부서 인원의 잦은 변동으로 적시에 오류를 파악하지 못한 점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오류를 인지하자마자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적

으로 회계를 재정비하고 재무제표 신뢰성 증대를 위해 노 력하고 있음.

- (위원) 감사 당시에 위탁가맹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회사가 알고 있었는지?
  - ▶ (진술인) 그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지는 못 하였음.
- (위원) 자금 흐름이 있을 텐데 상당기간 동안 회계부문에서 그 실태를 모를 수가 있는 것인지?
  - ▶ (진술인) 위탁가맹 점주의 명의로 모든 비용처리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회계팀조차도 그 위탁가맹에 대한 인지를 제 대로 하지 못하였던 것임.
  -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 두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회사는 위탁계약서 관련 거래에서 회사의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회계장부에 관련 거래를 전부 누락시켜 부 외로 관리하였고, 감사인에게 계약서 제시 없이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음. 또한, 회사가 사실과 다른 채권조회서 를 위탁가맹점주들에게 제시했을 때 위탁가맹점주들은 맞 다고 회신하였음. 결과적으로 회사의 위반행태로 인한 감 사의 고유한계로 인하여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 하는 전문가적 주의의무를 가지고 필수적인 절차를 수행

했음에도 회사의 위반사항을 적시에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람.

- (위원) 회사가 위탁가맹점에 지급하는 보증금을 보면 금액도
  꽤 크고 기존의 가맹점과는 다른 모습인데, 그렇다면 감사
  할 때 이것이 인지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 (진술인) 맞음. 그런데 이 매출도표를 보시면 회사가 위탁 보증금 자체는 본인들이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 계 약내용을 정리한 매출도표에도 가맹점과 동일하다고 표시 가 되어 있음. 그래서 저희는 감사절차를 수행했을 때 여 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회사가 처리한 회계 증빙, 거래 증빙들을 확인해 봤을 때 차이가 없다고 당시에 판단이 되었음.

# ▷ 두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위탁운영계약서를 △△회계법인에 제시했다는 얘기는 회사 회계팀이 위탁운영계약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자기들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 지를 모를 수가 있는지?
- (보고자) 회계처리와 관련해서 전문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잘 몰라서 회계처리를 위반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
- (위원) 회사 회계팀도 모르는 사실관계였다는 것을 고려할 경우 '중과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여 저는 '과실' 의견임.

- (위원) 회사가 사실과 다른 매출도표를 제시했고 계약관계도 감사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점, 물론 위탁운영계약 서를 징구하지 못한 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감사절차는 취한 것 같아 '과실' 의견임.
- (위원장) 제236호 안건은 ▲▲회계법인에 대하여 회사 회계 팀조차 본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 었던 점, 본 건 위반사항을 ▲▲회계법인이 처음 발견한 점, 채권채무조회서를 통해 위탁가맹점에 대한 회사 제시 채권 채무금액을 확인한 점, 전임감사인과의 징계형평성 고려 등 을 감안하여 '과실'로 양정하겠음. 따라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주의', 공인회계사 ◇◇◇〉, ◆◆◆, □□□에 대해 서는 '조치 없음'으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음.
-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수정의결함
- □ 보고안건 제60호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내부통제 개선권고 조치 관련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보고안건 제61호 『㈜ 셀트리온의 내부통제 개선권고 조치 관련 이행실적 점검결 과 보고』, 보고안건 제62호 『㈜셀트리온제약의 내부통제 개 선권고 조치 관련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상정하 여 서면보고로 갈음함.
  - ㅇ 각각 워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 각각 원안접수함

- □ 보고안건 제63호 『진성회계법인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 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품질관리감리본부장이 내용을 설명함.
  - ㅇ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접수함
- □ 보고안건 제64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 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ㅇ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접수함
- □ 보고안건 제65호 『**일반기업회계기준 2022년 개정 결과 보고**』 를 상정하여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ㅇ 워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접수함

- □ 의결안건 제237호 『㈜○○○○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장) 진술인의 의견을 듣기 전에, 자본시장조사단장께서 자조심 논의 결과를 반영한 공시의무 위반 관련 제재감경 방안을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람.
    - ※ 자본시장조사단장이 '○○○○(舊□□) 공시의무 위반제재감경 검토(안)' 보고함

#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舊□□)은 경영권 다툼으로 인해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거래정지까지 되어 회생의 가망이 요원하던 중에 員員員의 참여로 인해 2021년 11월 30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고 당사 임직원모두 회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을 인정받아 2022년 8월 관계자 여러분의 선처로 거래 재개가이루어졌음. 당사에 대한 증권거래제한과 과징금 부과조치의 원인은 당사가 경영권 다툼으로 인해 극심한 혼란과 관리부재 시 일어난 일들임을 먼저 고려해 주시고, 위반이 일어난 시점이 혼란한 상황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선처를 부탁드림. 당사는 최대주주 변경 과

정에서 前대표이사의 무자본 M&A 과정을 통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억울한 피해자일 뿐임. ■■■이 당시 최대 주주 및 대표이사였다는 이유로 ■■■이 저지른 일탈과 위법행위를 당사의 행위로 동일시하고, 물리적으로 보고 의무를 실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에게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닌 상처를 후비는 것이라 사료되오니 현명하신 위원님들의 재고를 요청드림.

##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아까 자본시장조사단에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 이견 없음.
- (위원) 저도 과징금 9,010만 원, 증권발행조치 6개월로 수정 하는 것에 동의함.
- (위원장) 제237호 안건은 ㈜○○○○의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회생절차의 취지, 선의의 최대주주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은 9,010만 원, 증권발행 제한조치는 6개월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음.
-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238호 『㈜셀트리온헬스케어 등 5개사 주식에 대 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 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의결함
- □ 의결안건 제239호 『○○○○○○○○○○○ ELW 등 30개 종목에 대한 시장교란행위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해당 매매거래는 △△△이라는 개인투자자와 마찰을 빚다가 생긴 일로 손익이전이나 조세회피 목적의 매매가 아니었음. 이러한 일회성거래로 인해서 급격한 시세변동을 유발하였다거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우려가 있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이 있음. 실제로 해당거래 이후 시세변동이 있었는지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지등에 대한 자료를 저희는 받아본 사실이 없음. 또 관련형사고소 사건과 민사소송에서 혐의자가 시세보다 현저히높은 가액으로 매매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고지금 감정절차가 진행 중임. 실제 피해액이 존재하는지여부, 있다면 그 액수가 얼마인지의 여부를 보려면 해당소송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위원회의 결정을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림.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 <!->○ (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고자) 맞음. 이전된 금액을 증여세 부과이율에 따라서 계 산한 결과임.
-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의결함
- □ 보고안건 제66호 『㈜○○○○○ 등 2개사 주식에 대한 부정 거래행위 긴급조치 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함.
  - ㅇ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접수함
- □ 보고안건 제67호『○○○○○ ○○**방안 보고**』를 상 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이 내용을 설명함.
  - ㅇ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접수함

- □ 보고안건 제68호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 시 일반투 자자 보호방안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ㅇ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접수함

#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2년도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9시 20분 폐회)